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원이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119

발의연월일: 2024. 8. 23.

발 의 자:김원이·조인철·이기헌

황정아 · 박희승 · 신정훈

남인순 · 김남근 · 김선민

서미화 • 박민규 • 장종태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라 지방대학의 장은 의과대학 등 의약계열 입학자 중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을 입학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여야 함. 의대·치대·한의대의 경우 강원·제주권은 지역인재를 최소 20%, 나머지 비수도권 권역은 40% 이상 선발하도록 하고 있음.

이러한 지역인재 선발제도는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고, 지방대학을 육성함과 함께 의료인력의 지방정주를 유도하여 의료인력의 수도 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임.

그러나 지방의대 졸업생들이 졸업 후 수도권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지방 의료인력 부족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임. 따라서 의약학 계열의 지역인재 선발제도의 효과성을 보다 객관적으 로 확인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엄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.

이에 지역인재 선발제도를 통해 입학한 의학계열 학생의 근무지역 등 취업현황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, 그 결과가 의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간 균형있는 의료인력 양성 및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15조의2 신설).

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5조의2(의료 분야 지역인재에 관한 실태조사) ① 교육부장관은 의료 분야 지역인재 육성 및 확보를 위하여 제15조제2항에 따라 선발된 사람의 취업현황에 대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.
 -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 - ③ 교육부장관은 「보건의료인력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에 관하

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15조의2(의료 분야 지역인재에
	관한 실태조사) ① 교육부장관
	은 의료 분야 지역인재 육성
	및 확보를 위하여 제15조제2항
	에 따라 선발된 사람의 취업현
	황에 대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
	<u>를</u> 하여야 한다.
	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
	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
	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
	<u>방자치단체의 장 및 「공공기</u>
	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
	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의
	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
	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
	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
	<u>한다.</u>
	③ 교육부장관은 「보건의료인
	력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보건
	의료인력 종합계획에 제1항에
	따른 실태조사 결과가 반영될
	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
	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

 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이

 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

 다.

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